

이사회는 부모/보호자는 자녀의 첫 번째이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스승이며, 자녀 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지속적인 참여는 학생의 성취와 긍정적인 학교 환경에 지대한 공헌을 한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다. 교육감 또는 교육감 대리인은 부모/보호자들을 위해 전 학년에 걸쳐 교육구와 학교의 활동, 자문, 의사 결정, 그리고 옹호자의 역할 및 가정에서 학습을 도와주기 위한 활동을 위한 의미 있는 기회들을 개발하기 위해 교직원, 그리고 부모/보호자와 더불어 함께 일해야 할 것이다.

- A. 부모/보호자들은 그들의 권리에 대하여 통보 받아야 한다: (1) 자녀의 교육에 대하여 통보를 받을 권리; (2) 자녀의 교육과정에 참여할 권리; (3) 부모/보호자 참여를 위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권리.
- B. 교육감이나 대리인은 학부모 참여의 기회의 타당성에 관하여 부모/보호자들과 학교 직원로부터의 의견을 포함한 교육구의 학부모 참여의 효과에 관하여, 그리고 부모/보호자의 참여를 제재할 수도 있는 장애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 C. 해마다 교육감이나 대리인은 교육구의 학부모 참여 프로그램과 타이틀 I 보조금을 받고 있는 학교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들을 설정해야 한다. 그/그녀는 부모/보호자들이 학부모 참여 프로그램의 계획, 설계, 시행, 그리고 평가에 상의하고 참가하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 D. 교육감이나 대리인은 타이틀 I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의 부모/보호자가 함께 교육구의 학부모 참여 전략을 개발하고 그것에 대한 동의를 받을 것을 확실히 해야 한다. 그 전략들은 학부모 참여에 대한 기대를 설정하고 교육구가 [20 USC 6318]에 명시된 각 활동을 어떻게 실행에 옮기게 될 것인가를 설명해야 한다. (20 USC 6318)
- E. 교육감이나 대리인은 타이틀 I 프로그램 학생이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학부모 참여 프로그램, 활동, 그리고 규정들을 계획함에 있어 부모/보호자와 상의해야 한다. 그/그녀는 교육구의 타이틀 I 보조금이 학부모 참여 활동을 위해 어떻게 할당할 지에 대한 결정에 있어 참여하고 있는 학생의 부모/보호자들을 포함시켜야 한다.
- F. 교육감이나 대리인은 타이틀 I 보조금을 받고 있는 각 학교가 학교 차원에서 20 USC 6318과 낙오 아동 방지법(No Child Left Behind) 섹션 1118에 따라 학부모 참여 정책을 개발하는 것을 보장 해야 한다.
- G. 교육감이나 대리인은 연방 타이틀 I 보조금을 받지 않는 학교의 부모/보호자들이 자녀의 교육에 참여하고 후원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교육법 11502에 다음과 같이 명시된 목적과 목표들을 교육구와 학교가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가를 설명하는 방법을 포함하여 타이틀 I 보조금을 받지 않는 각 학교에 시행할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한다:

- a. 학부모가 학교에서 자녀가 노력하는 것에 협력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고, 또한 자녀들이 우리 사회의 미래의 책임감 있는 구성원으로서의 성장하는 것을 도울 수 있는 기술을 개발 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학부모와 긍정적으로 연계한다.
- b. 학부모에게 그들이 자녀의 학업 성취를 향상시키고 가정에서의 학습을 도울 수 있는데 사용할 수 있는 기술과 전략들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성공적인 자녀의 학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 c. 가정과 학교 사이에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구축함으로써, 학부모가 교실 학습 활동에 있어 자녀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에 대하여 알 수 있도록 한다.
- d. 교사와 행정자들이 학부모와 효과적으로 의사를 소통할 수 있도록 훈련시킨다.
- e. 학부모 참여 프로그램을 학교 책무를 위한 학교 기본 종합에 포함시킨다.

A. 타이틀 I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과 비-타이틀 I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모든 부모/보호자들이 자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감이나 대리인은 반드시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20 USC 6312에 따른 지역 교육 기관(LEA)의 공동 개발 과정에, 그리고 20 USC 6316에 따른 학교 점검과 개선 과정에 타이틀 I 학생들과 비-타이틀 I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부모/보호자들을 포함시킨다. (20 USC 6318)

교육감이나 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 a. 이사회에 의해 마련된 검토 일정에 따라 LEA 계획을 검토하고 견해를 밝히기 위하여 각 학교를 대표하는 부모/보호자를 포함한 교육구 차원의 위원회를 마련한다.
 - b. 교육구의 다른 위원회들과 학교 평의회(School Site Councils: 이후 SSC)로부터 LEA 계획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다.
 - c. LEA 계획에 대하여 교육구 신문, 웹사이트, 기타 소통 방법 및 의견을 제공할 기회 등을 통하여 부모/보호자들과 의사를 소통한다.
 - d. 가능한 한 이해하기 쉽고 통일된 형태로 된 그리고 부모/보호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마련된 LEA 계획 작업 초안에 대한 접근을 제공한다.
 - e. 이사회가 계획을 승인 하거나 수정하기 이전에 공개 이사회 회의에서 LEA 계획에 관한 대중의 견해를 위한 기회를 확실히 마련한다.
 - f. 학교 차원의 정책들이 학생 성취를 위한 단일 계획(Single Plan for Student Achievement: 이후 SPSA) 개발과 검토에 있어서의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SCC와 그 외의 부모/보호자들의 역할을 명시할 것을 확실히 한다.
2. 타이틀 I 학교들이 효과적인 학부모 참여 활동의 계획과 시행에 있어, 그리고 학생 학업 성취와 학교 수행을 개선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 위하여 그 학교들에게 조직력과 기술 보조 및 기타 필요한 것에 대한 후원을 제공한다.

교육감과 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 a. 타이틀 I 학부모 참여에 관한 일들을 위하여 학교와의 연락 관계를 담당할 사람(들)을 교육구 사무실에 지정한다.
- b. 학부모 참여를 위한 타이틀 I 의무조항, 지도력 전략, 의사소통의 기술들에 관하여 또한

학부모 참여 활동을 계획과 시행을 촉진시키는 것을 돕기 위해 각 참여 학교의 교장이자 대리인을 위한 교육을 제공한다.

- c. 전략 개선을 계획하고 시행함에 있어 교직원과 부모/보호자들을 돕기 위해 진행 중인 교육구 차원의 워크숍을 제공하며 그 워크숍을 개발함에 있어 부모/보호자로부터 조건을 구한다.
 - d. 진행 과정을 관찰할 때 활용될 지표와 평가 도구에 대한 정보를 학교에 제공한다.
3. 강력한 학부모 참여를 위하여 학교와 부모/보호자의 수용 능력을 키운다.

교육감이나 대리인은 반드시 다음과 같이 한다:

- a. 주의 표준 교과내용과 학업 성취 기준, 주와 지역의 학력 평가, 타이틀 I (타이틀 I 학교들을 위한) 의무조항과 같은 주제들에 대한 부모/보호자의 이해를 돕고 또한 어떻게 자녀의 학습 발전의 관찰하는지, 그리고 그들의 자녀의 성취를 개선하기 위해 어떻게 교육자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 b. 적절한 읽고 쓰기 훈련과 기술 활용과 같이 부모/보호자가 자신들의 자녀의 성취를 향상 시키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그리고 위탁부모 참여에 대한 자료들과 교육을 제공한다.
- c. 교사, 학생 지원 서비스 담당자, 교장 및 기타 교직원들이 부모/보호자 공헌의 가치와 효용에 있어서 그리고 (1) 동등한 동반자로서 부모님들에게 어떻게 연락하고 소통하며 함께 일할 수 있는지; (2) 어떻게 부모/보호자 프로그램을 시행과 조직하며; 그리고 (3) 부모/보호자와 학교 사이의 결속력을 어떻게 만들어나가는지에 관하여 부모/보호자를 협력 할 수 있도록 교육시킨다. 또한 이것은 학부모 참여 프로그램을 학생 성취를 위한 학교 단일 계획(SPSA)에 통합 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 d. 가능한 한, 부모/보호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마련된 학교와 부모/보호자 프로그램, 회의 및 기타 활동들과 관련된 정보들을 발송할 것을 확실시 한다.
- e. 그 외에도 부모/보호자가 요청한 학부모 참여 활동을 위한 합당한 지원을 제공한다.
- f. 부모/보호자 및 학부모 기관들에게 캘리포니아 주 내에서 제공되는 교육, 정보 그리고 해당 학생들의 부모/보호자를 돕기 위해 제공되는 학부모 정보와 지원 센터들의 존재와 목적을 통보한다.

추가적으로, 교육감이나 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 a. 교사, 교장 및 기타 교육자들을 위한 교육 개발에 있어, 그리고 그 교육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일에 부모/보호자들을 포함시킨다.
- b. 만일 교육구가 읽기와 쓰기 교육을 위해 쓸 수 있는 적절한 모든 다른 자금이 고갈 되었을 경우에는 타이틀 I 보조금을 활용하여 필요한 읽기와 쓰기 교육을 제공한다.
- c. 부모/보호자들이 학교 관련 회의들과 교육에 참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교통수단, 탁아 비용 등을 포함한 학부모 참여 활동과 관련된 타당하고 필요한 비용을 지불할 수도 있다.
- d. 다른 부모/보호자들의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 부모/보호자들을 교육한다.
- e. 부모/보호자와 참여하는 학생과 직접적으로 일하는 교사나 다른 교육자들 간의 회의를 다양한 시간대로 배정한다.
- f. 학부모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한 모범 접근방안들을 도입하고 시행한다.
- g. 학부모 참여 활동 안에 지역 사회를 기반으로 한 기관들과 사업체들을 위한 적절한 역할들을 개발한다.
- h. 읽기와 쓰기 교육,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또는 부모/보호자와 가족들의 상황을 향상시키는 것을 돕는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대행 기관이나 조직들에게 위탁한다.
- i. 교육구 신문, 웹사이트, 또는 기타 문서나 전자적인 방법들을 통해 학부모 참여 기회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j. 정기적인 의사소통 개진과 정보 설명회를 통해 부모/보호자 참여를 적극적으로 구하기 위해 부모-교사 기관들과 연계한다.
- k. 가능한 한, 학교와 부모/보호자들과 관련된 회의들에 통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 l. 교육구 자문 위원회들과 학교 평의회(SSC)와 SSC 자문 위원회의 구성원들이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 위해 그들에게 교육과 정보를 제공한다.
- m. 학부모 참여와 관련된 교직원 능력 개발 활동들의 효율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한다.

- n. 교직원의 의무 설명과 평가 안에 부모/보호자 연락과 참여의 기대치를 포함시킨다.
4. 타이틀 I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와 비-타이틀 I 학교를 위하여, 학교의 학부모 참여 정책을 학업의 질의 향상과 부모/보호자 참여와 관련하여 그 내용과 효과에 대한 평가를 해마다 실시한다.

교육감이 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 a.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장애가 있으며, 영어 구사에 제한을 지니고 있으며 읽고 쓰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혹은 특정 인종적 또는 소수민족 배경을 지닌 부모/보호자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학부모 참여 활동에 참여하는데 큰 장애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을 평가에 포함 할 것을 보장한다.
 - b. 보다 효과적인 학부모 참여를 위한 전략 설계를 위해, 그리고 필요하다면 학교의 학부모 참여 정책에 수정을 제안하기 위하여 평가의 결과를 활용한다.
 - c. 학부모 참여 프로그램을 위한 연례 목표 달성에 있어서의 교육구의 진행 과정을 평가하고, 정규 학교 의사소통 방법들을 통해 이러한 검토와 평가를 부모/보호자에게 통보하며 그들이 요청하는 경우 그 사본을 부모/보호자에게 제공한다. (교육법 11503)
 - d. 포커스 그룹, 설문조사, 강습회 등과 같은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학교와 교육구 간의 의사소통의 질과 빈도에 대한 부모/보호자와 교직원들의 만족도를 평가한다.
 - e. 학교와 교육구의 활동에 참여하는 부모/보호자의 숫자와 그들이 참여하는 활동의 유형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찰한다.
 - f. 학생 성취를 위한 교육구의 학부모 참여 노력의 영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이사회에 추천한다.
5. 타이틀 I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와 비-타이틀 I 학교들을 위하여, 학교 활동 등에 부모/보호자들을 포함시킨다.

교육감이나 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 a. 부모/보호자와 교육구 사이의 의사 소통 안에 학교 활동에 대한 정보를 포함시킨다.

- b. 가능한 한, 특별한 필요를 지닌 부모/보호자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필요한 통역이나 기타 편리제공에 있어서 학교에 협력한다.
 - c. 자녀들에 대한 부모/보호자들이 가진 기대와 염려에 관련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한다.
6. 학부모 참여 전략들을 담고 있는 교육구 이사회의 정책과 행정 규정은 반드시 LEA 계획에 포함 되어야 하며 타이틀 I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와 비-타이틀 I의 학교 학생들의 부모/보호자들에게 배부해야 한다.
- B. 타이틀 I 보조금을 받고 있는 각 학교는, 참여하는 학생들의 부모/보호자들과 함께 학부모 참여에 대한 서면 정책을 개발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정책에는 학교가 시행할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1. 학교가 타이틀 I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그리고 타이틀 I의 의무조항들과 이 일에 개입할 수 있는 부모/보호자의 권리에 대하여 설명하기 위하여 편리한 시간에 연례 회의를 소집하여 재학 중인 학생들의 모든 부모/보호자들을 반드시 초대하고 참석하도록 격려한다.
 2. 교통편, 탁아, 그리고/혹은 가정 방문 등의 학부모 참여와 관련하여 제공될 수도 있는 서비스와 아침이나 저녁 등 융통성 있는 시간대의 회의들을 마련한다.
 3. 학교의 학부모 참여 정책의 계획, 검토 그리고 개선, 그리고 해당이 된다면 학교 전체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의 공동 개발 등을 포함하여 조직이 되어 진행 중인, 그리고 시기에 맞는 타이틀 I 프로그램의 계획, 검토와 개선에 부모/보호자들을 포함시킨다.
- 주어진 절차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부모/보호자들의 적절한 대표자들을 포함하는 한, 학교는 학교 프로그램의 공동 계획과 설계에 있어서 부모/보호자들의 참여를 위한 기존의 절차를 사용 할 수도 있다.
4. 다음과 같은 사항을 참여하는 학생들의 부모/보호자들에게 제공한다:
 - a. 타이틀 I 프로그램에 대한 시기 적절한 정보
 - b. 학교 교과과정의 내용과 설명, 학생 발달 측정에 사용되는 학력 평가의 양식 및 학생이 도달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숙달의 수준
 - c. 만일 부모/보호자가 요청한다면, 제안을 구상하고 참여하며, 해당이 된다면 자녀 교육과 관련된 결정에 있어서, 또한 될 수 있는 대로 부모/보호자의 제안에 응답한다.

5. 만일 참여하는 학생들의 부모/보호자가 학교 전체 프로그램 계획에 만족하지 않았을 경우, 학교가 교육구에 그 계획을 제출할 때 부모/보호자의 견해를 제출한다.
6. 어떻게 부모/보호자들, 학교 전체 교직원, 그리고 학생들이 개선된 학생의 학업 성취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고 있는 지에 대한 개요를 서술하고 있는 동의서를 부모/보호자와 함께 개발하고 그것에 의해 학교와 부모/보호자는 학생들이 주의 표준 학력에 도달할 수 있도록 파트너십을 결성한다.

이 동의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명시해야 한다:

- a. 높은 질의 교과과정과 참여하는 학생들이 주의 학생 학력 성취 기준에 도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협력적이고 효과적인 교육 환경에서의 수업을 제공해야 하는 학교의 책임
 - b. 부모/보호자들은 자녀의 출석, 숙제 완료, 텔레비전 시청 등을 주시하고 관리함으로써, 교실에서 자원봉사하며, 적절한 경우 자녀 교육과 특별 과외 활동시간의 긍정적인 활용 등과 같은 자녀 교육을 후원할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들
 - c. 교사들과 부모/보호자 간의 장기적인 의사 소통의 중요성: (1) 동의서가 학생의 성취와 관련된 것으로서 논의되는 동안 적어도 일년에 한번의 학부모-교사 컨퍼런스, (2) 자녀의 발달 진행에 관한 부모/보호자에게 하는 빈번한 보고들, (3) 교직원에게 연락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 자녀의 교실에서 자원 봉사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 및 교실 활동 참관.
7. 활동들을 시행함으로써, 강력한 부모 참여를 위해 학교와 부모/보호자의 수용 능력을 구축한다.
 8. 실현이 가능한 한, 영어 구사에 제한이 있는 부모/보호자, 장애를 지닌 부모/보호자, 그리고 이민 자녀의 부모/보호자들의 참여를 위해 이러한 부모/보호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마련된 정보와 학교 보고서 제공을 포함한 진폭적인 기회를 제공한다.
 - a. 만일 학교가 모든 부모/보호자들에게 적용되는 학부모 참여 정책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위의 조건들에 부합하기 위해 수정할 수 있다.
 - b. 각 학교의 학부모 참여 정책은 반드시 지역 사회가 열람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이해하기 쉬우며 통일적인 형태로 참여하는 학생의 부모/보호자들에게 배부되어야 하고, 실현이 가능하다면 부모/보호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 9. 타이틀 I 보조금을 받고 있는 각 학교는 해마다 학교의 학부모 참여 정책의 효율성을 평가해야 한다. 이와 같은 평가는 교육법 64001에 따라 학생 성취를 위한 학교 단일 계획(SPSA)의 검토과정에서 시행될 수도 있다.

- 10. 교육감이나 대리인은 참여하는 학생들의 부모/보호자들과 공동으로 부모/보호자들과 학교의 필요에 부합하기 위해 학교 정책을 정기적으로 갱신해야 할 것이다.

법적 참조:

EDUCATION CODE (교육법)

- 11500-11506 Programs to encourage parent involvement (학부모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프로그램들)
- 48985 Notices in languages other than English (영어가 아닌 언어들로 된 공지들)
- 51101 Parent rights and responsibilities (학부모의 권리와 책임들)
- 64001 Single Plan for Student Achievement (학생 성취를 위한 단일 계획)

LABOR CODE (노동법)

- 230.8 Time off to visit child's school (자녀의 학교 방문을 위한 휴가)

UNITED STATES CODE, TITLE 20 (미 연방법, 타이틀 20)

- 6311 Parental notice of teacher qualifications and student achievement (교사 자격과 학생 성취에 대한 학부모 공지)
- 6312 Local educational agency plan (지역 교육 기관 계획)
- 6314 Schoolwide programs (학교 전체 프로그램)
- 6316 School improvement (학교 개선)
- 6318 Parent involvement (학부모 참여)

CODE OF FEDERAL REGULATIONS, TITLE 28 (미 연방 규정집, 타이틀 28)

- 35.104 Definitions, auxiliary aids and services (정의들, 보조 지원과 서비스들)
- 35.160 Communications (의사소통)

PUBLIC LAW (공법)

- 100-297, 1016(b)

Board of Trustees (이사회)

May 23, 1991

검토: February 1993

검토: October 1995

수정: February 2000

수정: June 2003

검토: March 2005

수정: November 2009

E

Translated by Esther Park on 08/20/2014